

충북 제약바이오 제품화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화지원 수요기업 모집 공고

교육부와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제약바이오사업단), (재)충북테크노파크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육성을 위해 『충북 제약바이오 제품화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화지원』의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충북 지역(충주, 진천, 음성)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12월

(재)충북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충북 제약바이오 중소기업 우수제품 발굴 및 사업화지원을 통한 제품화 역량 강화로 시장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명 : 충북 제약바이오 제품화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화지원
- 사업기간 : 2021.12.01. ~ 2022.02.28
- 주관기관 :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 제약바이오사업단
- 수행기관 : (재)충북테크노파크

○ 사업화지원 분야

- 시제품 제작, 인증 및 인허가 컨설팅, 디자인·홍보 지원

○ 지원대상

- 충북 지역 충주, 진천, 음성 내 소재한 제약바이오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관련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지역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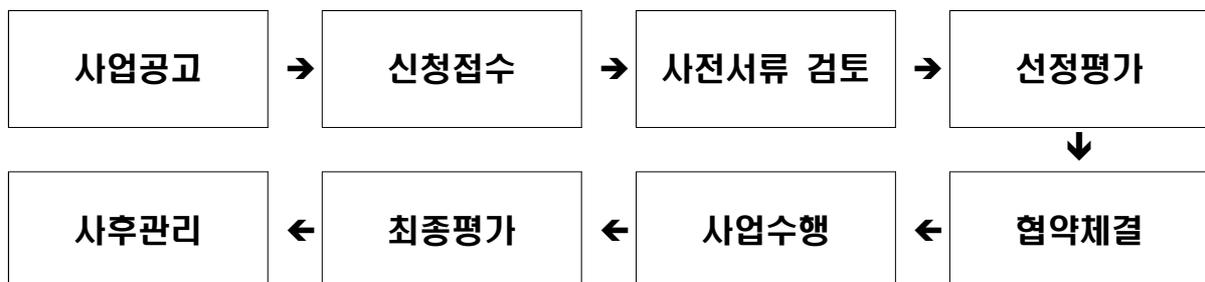
○ 지원프로그램 내용

지원 분야	세부 분야	지원내용	지원금액 (천원)	사업기간
제품 상용화	시제품 제작	· 개발제품의 사업촉진 및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개발)제작	15,000 (부가세 포함)	선정 후 ~ 02.28
제품 경쟁력 강화	인증·인허가 컨설팅	· 시장 진입을 위한 각종 인증·인허가 관련 컨설팅 지원 · 품목허가, 기술문서, 시험분석 등 컨설팅 · GMP, ISO 등	15,000 (부가세 포함)	
브랜드 가치 제고	디자인	· 포장디자인, 기업 CI/BI 등을 통한 고급화 이미지 전략	8,000 (부가세 포함)	
	홍보	· 브로슈어, 홍보동영상, 홈페이지 제작 등		
* 사업수행 시 수요기업의 참여대학 학생 1명 이상 지원 프로그램 관련 현장실습 교육 진행 필수				

○ 지원방법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신청
- 수요기업 선정 후 간접지원(공급기업(관) → 수요기업)

○ 추진절차



2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발표 또는 서면평가로 진행
- 10,000천원 이하 서면평가, 10,000천원 초과 발표평가

○ 평가기준

-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에 따라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를 통해 신청 컨소시엄을 평가하여 최종 수요기업 선정
-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 점수 70점 이상 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
- 사업계획서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 2021. 12. 22(수) ~ 2022. 01. 12(수)

○ 접수기간 : 2022. 01. 03(월) ~ 2022. 01. 12(수) 오후 17:00 마감

※ 미달된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위 일정 이후 수시 접수

○ 신청방법

단계	구분	내용
1	신청 및 사업계획서 (양식)	www.cbtp.or.kr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2	온라인 사업신청	담당자 E-Mail 제출
3	서류제출(원본1부, 사본5부)	사업담당자 온라인 접수 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신청서류 오류 및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기업에게 있으므로 항상 확인 必.

○ 제출서류

제출서류	수요기업	공급기업
①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원본1부, 사본5부) 양식 1	○	-
② 수요기업 대표 참여의사 확인, 정보 활용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양식 2)	○	-
③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	-
④ 결산재무제표 1부(원본 1부) : 최근 결산일 기준 (3년 이내)	○	-
⑤ 기업역량자료 6부 (보유 인증 및 특허, 수상자료 등)	해당기업	-

※ 공급기업(관) 제출서류는 과업수행사 안내자료 참고, 컨소시엄 선정 완료 후 해당 공급기관 별도 서류 제출 안내 예정

4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 유의사항

- ① 타 과제와 동일 과제에 대하여 중복 수행할 수 없음
 - ②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에서 부담원칙
 - ③ 사전승인 없이 사업비를 변경하여 집행할 경우 사업비 사용 불인정
 - ④ 입금된 사업비 통장을 현금인출 및 타 사업비 통장으로 무단인출 시 사업비 환수
 - ⑤ 사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시 추후 참여제한 등 불이익 주어짐
 - ⑥ 이미 제작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과제 지원제외
-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 해당 사업기간 내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동일자금 등을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중복지원 방지)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 기업의 부도,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
 - 동일과제에 대해 타 기관에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창업3년 미만인 기업은 예외로 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정적” 인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이 미비한 경우
 - 기타 옥천군 및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5 접수처 및 서류제출

- (2811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60 본부관 2층 기업지원단 203호
- ☎ 유동아 선임연구원 (E-mail : yda0102@cbtp.or.kr, Tel : 043-731-5023, Fax : 043-731-5028)
 - ☎ 김인순 주임연구원 (E-mail : ea8148@cbtp.or.kr, Tel : 043-731-5024, Fax : 043-731-5028)